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6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31.
3. 회부연월일 : 2025. 01. 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시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특화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은 국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0조(특화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u> <u>⑥ 국가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u>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현행법 제11조1)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함.

정부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 지역특화발전
특구 제도를 시행 중이며, 현재 175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운영
중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	6	5	2	3	1	3	20	13	16	16	13	30	21	14	2	17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특화특구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면, 관계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129개의 규제특례 중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적용함.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구 분	특 례	구 분	특 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이용 (54개)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일률적인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규제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유입 및 민관투자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현재 예산의 편성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없음.

이처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반면, 현행법 제75조제3항 및 제4항²⁾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인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96조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제9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³⁾,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등”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 비교

구분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목적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도입 시기	2004년	2019년
현황	전국 175개	전국 43개(비수도권) * 규제자유특구 39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지정 절차 (요건)	◦ (지정절차)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신청 → 특화특구위원회 심의 →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사업내용, 주체, 지역 등 제한 없음	◦ (지정절차)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신청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지정요건) 비수도권만 가능
규제 완화	◦ (메뉴판식 규제특례) 129개 특례 중 선택 적용	◦ (규제혁신 3종세트) ① 규제 신속확인, ② 실증특례, ③ 임시허가 ① (신속확인)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 시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 ② (실증특례)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을 시 신기술 관련 시험·검증토록 규제를 완화 ③ (임시허가)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을 시 + 안전성 검증 → 임시허가(시장 출시 허용) ◦ (메뉴판식 규제특례) 203개 특례 중 선택 적용
재정 지원	◦ 직접적인 재정·조세지원 없음	◦ 실증R&D, 사업화, 실증기반 구축 지원 등 총 479억원('24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개정안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대응하여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의 보조금 등 지원은 의무조항이 아닌 재량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⁴⁾이나, 개정안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재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 등의 일부 입법례에서는 “보조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 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정을 지원하는 등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지역의 경우에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이 법에 따른 ‘지역특화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파목⁵⁾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⁶⁾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국고 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⁷⁾는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5)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과,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180.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사업효과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이 기대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재정지원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은 관련 예산의 의무적 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현행법에서 규제자유특구의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467